

2024년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1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47건(안건번호 제2024-1116호~제2024-155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116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 방송물의 홍보영상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전송중인 영상물이 원저작물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무료 공개 영상인 점,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4-1117호(순번 2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118호~1227호(순번 3번~12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2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현주 변호사: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
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
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6쪽 내지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변호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변호사: 금일 심의안건은 1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8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방송물의 공식 홍보 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방송물의 자막, 무자막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공식 홍보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심의대상 게시물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영상물은 원저작물인 방송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 중인 것으로, 방송물 자체와는 별개의 콘텐츠임. 관리자가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자유로운 복제·전송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무료 공개중인 각 홍보용 영상이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불법복제물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 제도에 의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의 경우 공식 홍보용 영상과 동일한 영상으로, 시장대체성 등을 고려할 때 본래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부결 의견임.
- C, D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

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파일(smi)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이며, 총 1건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 등)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판단하고 있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

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광고를 게시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블로그에 약 수백여 건의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1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방송물, 영화 등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이며, 총 17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1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변호사: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3번~4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82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선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3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선산'의 약 4시간 43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9.에 방영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임.

(방송 '킬러들의 쇼핑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7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킬러들의 쇼핑몰'의 약 5시간 25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7.에 방영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임.

(영화 '서울의 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8번은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저작물임. 웹하

드에서 영화 '서울의 봄'의 약 2시간 22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22. 개봉한 국내 영화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순번 13번~43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43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116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4-1117호(순번 2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118호~1227호(순번 3번~1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

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228호~1553호(순번 13번~43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21.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